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에 관한 공시

❑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

▪ 개정사유

-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변경 및 분리 선출 대상이 되는 감사위원 인원의 확대를 반영하고,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등에 따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

▪ 주요 개정내용(신·구조문 비교표)

기 존	개 정 후	개 정 사 유
제2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이 규범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1. 생략 2. '이사' 란 사내이사,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(이하 '비상임이사'라 한다)를 말한다. 3. 생략	**제2조 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이 규범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1. 생략 2. '이사' 란 사내이사, 독립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(이하 '비상임이사'라 한다)를 말한다. 3. 생략	▪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변경 반영
제4조(이사회의 구성) ① 생략 ②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되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.	**제4조(이사회의 구성)** ① 생략 ②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되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.	

기 존	개 정 후	개 정 사 유
제5조(이사회 의장) ① 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 단,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 의장 이외에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 ② ~③ 생략	**제5조(이사회 의장)** ① 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 단, 독립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 의장 이외에 독립이사를 대표하는 선임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 ② ~③ 생략	
제7조(이사의 자격요건) ① 생략 ② 사외이사는『지배구조법』 제5조와 제6조, 기타 관련 법령, 정관 및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, 전문성, 직무공정성, 윤리의식, 책임감 및 충실성 등을 갖춘 것으로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이어야 한다.	**제7조(이사의 자격요건)** ① 생략 ② 독립이사는『지배구조법』 제5조와 제6조, 기타 관련 법령, 정관 및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, 전문성, 직무공정성, 윤리의식, 책임감 및 충실성 등을 갖춘 것으로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이어야 한다.	
제8조(이사의 선임과 해임)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 다만, 대표이사,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 ②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. ③~⑤생략	**제8조(이사의 선임과 해임)**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 다만, 대표이사, 독립이사 및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 ②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중 2명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. ③ ~⑤생략	▪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변경 반영 및 분리선출 감사위원 인원 확대
제9조(이사의 임기)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사외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	**제9조(이사의 임기)**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독립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회사에서 6년 이상 독립이사로	▪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변경 반영

기 존	개 정 후	개 정 사 유
재직하였거나,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 합산하여 9년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. ② 생략	재직하였거나,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 합산하여 9년이상 독립이사로 재직한 자는 독립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. ② 생략	
제10조(이사의 권한과 책임) ① ~⑤ 생략 ⑥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 및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	**제10조(이사의 권한과 책임)** ① ~⑤ 생략 ⑥ 독립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 및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	
제11조(이사회의 소집) ① ~③ 생략 ④ 선임사외이사는 균형 있는 이사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에게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사외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권한이 있으며, 이때 회사는 이사회에 준하여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	**제11조(이사회의 소집)** ① ~③ 생략 ④ 선임독립이사는 균형 있는 이사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에게 독립이사로만 구성된 독립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권한이 있으며, 이때 회사는 이사회에 준하여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	
제12조(이사회의 결의방법)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'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(상법 415조의2 제3항)' 및 '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(상법 제397조의2)', '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(상법 제398조)'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하며,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에 의거한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	**제12조(이사회의 결의방법)**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'독립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(상법 415조의2 제3항)' 및 '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(상법 제397조의2)', '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(상법 제398조)'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하며,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에 의거한	

기 존	개 정 후	개 정 사 유
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② ~③ 생략	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② ~③ 생략	
제15조(임원후보추천위원회)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고,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.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은 다음과같다 1. 임원(대표이사, 사외이사, 감사위원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후보 선임원칙의 수립, 점검, 보완 2. 임원 후보 추천 3. 상시적인 최고경영자(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를 말한다. 이하 이 규범에서 같다) 및 사외이사 후보군의 관리 및 후보 검증 4. 그 밖에 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③ 생략	**제15조(임원후보추천위원회)**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로 구성하여야 하고, 위원회의 위원장은 독립이사로 한다.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은 다음과같다 1. 임원(대표이사, 독립이사, 감사위원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후보 선임원칙의 수립, 점검, 보완 2. 임원 후보 추천 3. 상시적인 최고경영자(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를 말한다. 이하 이 규범에서 같다) 및 독립이사 후보군의 관리 및 후보 검증 4. 그 밖에 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③ 생략	
제16조 (감사위원회)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. ② ~④ 생략	**제16조 (감사위원회)**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독립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회의 위원장은 독립이사로 한다. ② ~④ 생략	

기 존	개 정 후	개 정 사 유
제17조(위험관리위원회)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. ② ~③ 생략	**제17조(위험관리위원회)**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회의 위원장은 독립이사로 한다. ② ~③ 생략	
제18조(보수위원회) ① 보수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. ② 보수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. 지배구조법 제22조에 관한 사항의 결의 2. 사외이사 지원조직 업무총괄자 및 선임계리사에 대한 성과평가 참여 3. 그 밖에 보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~④생략	**제18조(보수위원회)** ① 보수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회의 위원장은 독립이사로 한다. ② 보수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. 지배구조법 제22조에 관한 사항의 결의 2. 독립이사 지원조직 업무총괄자 및 선임계리사에 대한 성과평가 참여 3. 그 밖에 보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~④생략	
제19조(내부통제위원회) ① 내부통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. ② ~④ 생략	**제19조(내부통제위원회)** ① 내부통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회의 위원장은 독립이사로 한다. ② ~④ 생략	
(신 설)	**제19조의2(내부거래위원회)** ① 내부거래위원회는 3인의 독립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위원	▪ 내부거래위원회 신설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 정비

기 존	개 정 후	개 정 사 유
	중에서 선임한다. ② 내부거래위원회는 대주주·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하여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수행하며, 그 권한은 다음과 같다. 1. 보험업법 제111조,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사전심의 2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심의 3.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정하는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심의 4.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요청 5. 그 밖에 내부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내부거래위원회는 심의 내용 및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④ 내부거래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당해 위원회규정에 따른다.	
제34조(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) ① 제29조에 따른 지원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 1.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(발굴·평가·검증) 업무 2.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	**제34조(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)** ① 제30조에 따른 지원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 1.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(발굴·평가·검증) 업무 2.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	▪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에 관한 인용조문 정비

기 존	개 정 후	개 정 사 유
평가업무 지원 3.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프로그램 관리 4. 그 외에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업무 ② 생략	평가업무 지원 3.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프로그램 관리 4. 그 외에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업무 ② 생략	
(신 설)	부 칙 ① 이 규범은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② 독립이사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③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관한 제8조 제2항의 개정은 정관변경 효력 발생일부터 시행하되, 해당 조항의 '독립이사'는 상법 시행 전까지 '사외이사'로 본다.	▪ 상법 시행시기를 고려한 부칙 신설